

붙임3.

원 가 계 산 서

본 원가계산서는 본 계약의 PM/RM 또는 QS전문가 1인의 인력투입 단가에 대한 계약 당사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자료이다.
 "갑"과 "을"이 합의하여 이미 투입한 PM/RM 또는 QS전문가 1인의 투입단가는 총액(Lump-sum)으로 상호 합의되어 투입된 것으로 본다.
 본 원가계산서의 세부 항목 및 산출 근거 상의 내용에 대하여 실근무일수의 차이, 투입인력의 자격증의 유무, 투입인력의 역량 부족, 미사용, 사용금액의 차이, 타용도의 사용, 발주자 등에서 관련 내용의 비용 및 사용편의를 제공하였다는 등 기타의 어떠한 사유로 PM/RM 또는 QS전문가 1인의 투입단가를 정산할 수 없다. 투입단가의 세부적인 사용에 대한 모든 재량권은 "을"에게 있다.
 1인을 초과하여 추가 투입되는 경우, "갑"과 "을"의 합의에 따라, 인력투입 전 해당인력에 대한 별도의 원가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해당 추가 인원에 한하여 합의된 원가계산서의 투입단가가 총액(Lump-sum) 개념으로 상기와 같이 적용된다.

구 분	기 준	수식	금 액	비 고
QS전문가 임금	월간 근무일	22일	9,356,724	기술사 MRICS 1인 1개월 22일 근무기준
기술사 노임단가	기술사	1일	369,831	1인 1일 기준
QS 전문성 가산	MRICS	15%	55,475	기술사 노임단가에 15% 할증
QS 전문가 임금	기술사 MRICS	1일	425,306	기술사 MRICS의 1일 임금
QS전문가 임금에 대한 회사부담금	합계		1,440,704	원/월
국민연금	보수월액의	4.5%	218,700	회사부담분: 4.5%, 개인부담분: 4.5% 월 486만원보다 많으면 486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건강보험료	보수월액의	3.335%	312,047	회사부담분: 3.335%, 개인부담분: 3.335%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의	10.25%	31,985	회사부담분: 50% (회사규모에 따라 할증), 개인부담분: 50%
고용보험료	보수월액의	1.05%	98,246	회사부담분: 0.8%, 개인부담분: 1.05%
퇴직금 적립금	보수월액의	8.333%	779,727	회사부담분: 100%
본사 관리비	합계		816,043	원/월
사무실 구성비용 1인 부담금		10%	230,100	10인 사무실 중 1인에 대하여 1개월 1.5평 실사용기준
컴퓨터 임대료			240,000	1개월 1인, 보통 사양의 노트북 (운영 소프트웨어, AutoCAD, Web-Cost 포함)
세무회계 및 행정업무처리비용		10%	245,943	10인 사무실에 세무회계 및 행정담당 사무원 1인 최저임금 고용기준
세무기장 대행료			100,000	원/월, 세무사 사무소 기장대리
업무차량 지원비	합계		607,778	원/월, 아반떼 급 기준
PM업무 추가 수행 및 업무책임에 따른 위험요인 가산 (아근, 휴일 및 주말근무, 비상대처 업무 반영)	QS전문가 임금의	10%	1,079,743	(QS전문가 임금+QS전문가 임금에 대한 회사부담금) * 10%
risk management 업무 추가 수행 및 업무책임에 따른 위험요인 가산 (아근, 휴일 및 주말근무, 비상대처 업무 반영)	PM전문가 임금의	20%	2,375,434	(QS전문가 임금+QS전문가 임금에 대한 회사부담금+PM업무 추가 수행 및 업무책임에 따른 위험요인 가산) * 20%
회사이윤		5.0%	783,821	QS전문가 인건비 및 본사 관리비 등의 합계의 5%
RM전문가 인건비, 본사 관리비 및 이윤 합계	1인의 투입단가		16,460,247	원/월 (부가세 별도)

1주당 상주 일수에 따른 원가 조정

RM전문가 인건비, 본사 관리비 및 이윤 합계	월간 근무일	22일	16,460,247	기술사 MRICS 1인 1개월 22일 근무기준
1주당 상주일수에 따른 원가 조정	주5일중 상주	1일	3,292,049	원/월
부분 현장상주에 따른 본사 비상주 추가 업무 가산		15%	493,807	원/월
소계			3,785,857	원/월 (부가세 별도), 제주도 내 프로젝트 기준
추가 출장 교통비 및 출장 숙박비		10%	329,205	원/월, 1박 숙박비 100,000원 및 왕복 교통비
부분상주 RM전문가 인건비, 본사 관리비 및 이윤 합계			4,115,062	원/월 (부가세 별도), 제주도 외 프로젝트 기준

1일 투입단가

RM전문가 인건비, 본사 관리비 및 이윤 합계	월간 근무일	22일	16,460,247	기술사 MRICS 1인 1개월 22일 근무기준
상주일수에 따른 원가 조정	월22일중 상주	1일	748,193	원/월
현장 단기업무에 따른 본사 비상주 추가 업무 가산		15%	112,229	원/월
추가 출장 교통비 및 출장 숙박비		10%	74,819	원/월, 1박 숙박비 100,000원 및 왕복 교통비
1일투입 RM전문가 인건비, 본사 관리비 및 이윤 합계			935,241	원/월 (부가세 별도)

산 출 근 거

본 원가계산서는 본 계약의 PM/RM 또는 QS전문가 1인의 인력투입 단가에 대한 계약 당사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자료이다.

"갑"과 "을"이 합의하여 이미 투입한 PM/RM 또는 QS전문가 1인의 투입단가는 총액 (Lump-sum)으로 상호 합의되어 투입된 것으로 본다.

본 원가계산서의 세부 항목 및 산출 근거 상의 내용에 대하여 실근무일수의 차이, 투입인력의 자격증의 유무, 투입인력의 역량 부족, 미사용, 사용금액의 차이, 타용도의 사용, 발주자 등에서 관련 내용의 비용 및 사용편의를 제공하였다는 등 기타의 어떠한 사유로 PM/RM 또는 QS전문가 1인의 투입단가를 정산할 수 없다. 투입단가의 세부적인 사용에 대한 모든 재량권은 "을"에게 있다.

1인을 초과하여 추가 투입되는 경우, "갑"과 "을"의 합의에 따라, 인력투입 전 해당인력에 대한 별도의 원가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해당 추가 인원에 한하여 합의된 원가계산서의 투입단가가 총액(Lump-sum) 개념으로 상기와 같이 적용된다.

사무실 구성비용 1인 부담금				
사무실 매입, 인테리어, 집기 비용 합계			339,300,000	원
사무실 매입비용 합계			316,800,000	원
사무실 매매 평당 단가			10,000,000	매매기준
매매 계약 면적			30	평
사무실 매입가			300,000,000	원
취득세 등 세금	4.70%		14,100,000	원
공인중개사 수수료	0.90%		2,700,000	원
실사용면적	50%		15	평
인테리어 비용	1,000,000		15,000,000	원
사무실 집기	500,000		7,500,000	원
사무실 매입, 인테리어, 집기 비용 은행대출시 연이자	4%		13,572,000	원/년
사무실 구성비용 월 부담금			2,301,000	원/ 1개월 10인 사무실 기준
사무실 매입, 인테리어, 집기 비용 은행대출시 월이자	8.33%		1,131,000	원/월, 10인 사용기준
사무실 관리비	20,000	원/평	600,000	원/월, 10인 사용기준
사무용 소모품			300,000	원/월, 10인 사용기준
복합기 렌탈			100,000	원/월, 10인 사용기준
사무실 출입카드 및 보안시스템			100,000	원/월, 10인 사용기준
정수기 임차료			70,000	원/월, 10인 사용기준
사무실 구성비용 1인 부담금	10%		230,100	10인 사무실 중 1인에 대하여 1개월 1.5평 실사용기준

컴퓨터 임대료				
노트북	렌탈		100,000	1개월 1대
MS Office	사용료		15,000	원/월, 온라인 회원
Windows 10	사용료		10,000	원/월, 온라인 회원
AutoCAD	사용료		65,000	원/월, 온라인 회원
Web-Cost	사용료		50,000	원/월, 온라인 회원, 한국물가정보 적산프로그램
컴퓨터 임대료			240,000	1개월 1인, 보통 사양의 노트북 (운영 소프트웨어, AutoCAD, Web-Cost 포함)

사무원 1인 최저임금				
사무원 월 최저임금			1,790,000	1인 1개월 기준
사무원 월 최저임금에 대한 회사부담금			314,327	원/월
국민연금	보수월액의	4.5%	80,550	회사부담분: 4.5%, 개인부담분: 4.5%
건강보험료	보수월액의	3.335%	59,697	회사부담분: 3.335%, 개인부담분: 3.335%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의	10.25%	6,119	회사부담분: 50% (회사규모에 따라 할증), 개인부담분: 50%
고용보험료	보수월액의	1.05%	18,795	회사부담분: 0.8%, 개인부담분: 1.05%
퇴직금 적립금	보수월액의	8.333%	149,167	회사부담분: 100%
사무원이 사용하는 사무실 구성비용 1인 부담금			230,100	원/월
사무원이 사용하는 컴퓨터 임대료			125,000	원/월 (AutoCAD, Web-Cost 사용료 제외)
사무원 1인 최저임금 합계			2,459,427	10인 사무실에 세무회계 및 행정담당 사무원 1인 최저임금 고용기준

업무차량 지원비				
차량 렌트비용			350,000	1개월, 아반떼, 4년 무보증
연비			14.4	km/L
휘발유 가격			1,700	원/L
출근거리	편도		40	km
	왕복		80	km
근무일수			22	일
월간 총이동거리			1,760	km/월
소요 유류량			122	L
유류비용			207,778	원/월, 출퇴근거리만 반영
차량소모품, 세금, 보험료 등 기타비용			50,000	원/월
업무차량 지원비 합계			607,778	원/월, 아반떼 급 기준

완전 비상주 용역에 따른 원가 조정				
RM전문가 인건비, 본사 관리비 및 이윤 합계	월간 근무일	22일	16,460,247	기술사 MRICS 1인 1개월 22일 근무기준
완전 비상주 용역에 따른 비용		15%	2,469,037	상주용역금액의 15% 적용, 출장시 별도의 출장인건비 및 경비 부과됨
완전비상주 RM전문가 인건비, 본사 관리비 및 이윤 합계			2,469,037	원/월 (부가세 별도)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정책연구실-365호(2019.12.10)

2019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

본 협회에서 실시한 2019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 제372001호) 결과를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가. 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 기술자 노임단가

(단위 : 원, 1인 1일 기준)

구분	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건설	환경	원자력	기타**
기술사	380,332	376,782	366,143	369,831	370,148	473,603	345,558
특급기술자	320,865	278,900	264,610	288,036	271,754	422,724	278,662
고급기술자	266,614	240,454	238,021	235,682	247,322	323,208	232,210
중급기술자	218,272	217,583	221,440	219,451	199,510	270,681	192,491
초급기술자	191,435	200,502	175,817	170,615	175,373	231,169	164,798
고급숙련기술자	231,219	229,382	194,235	204,010	189,577	274,760	210,778
중급숙련기술자	190,082	177,851	165,458	174,996	174,180	260,517	163,000
초급숙련기술자	160,022	163,155	144,174	157,750	157,690	160,899	143,934

- 상기 제시된 노임단가는 1일 단가 (만근한 기술자 월 인건비(원) ÷ 22일(평균근무일수))

* 엔지니어링기술부문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엔지니어링기술(제3조 관련) 별표1에 따름

** 기타 : 엔지니어링기술부문 중 선박, 항공우주, 금속, 화학, 광업, 농림, 산업, 해양수산 해당(보고서 참조)

나. 평균근무일수 : 22일

다. 적용일 : 2020년 1월 1일 부터

<참고> 엔지니어링 활동분류별 기술자 노임단가

(단위 : 원, 1인 1일 기준)

구분	원자력발전	산업공장	건설 및 기타
기술사	468,264	460,221	367,855
특급기술자	415,595	371,849	281,166
고급기술자	319,109	254,953	238,416
중급기술자	270,904	227,291	211,188
초급기술자	226,051	213,000	173,117
고급숙련기술자	291,202	240,335	204,194
중급숙련기술자	263,601	188,875	175,373
초급숙련기술자	162,683	165,123	156,243

* 현행 기술자노임단가 분류체계 변경(2016.1.1) 전 계약된 사업의 경우, 참고의 '엔지니어링활동분류별 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

한국엔지니어링협회장

[임금통계작성기관 (국가승인통계 제372001호)]

